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」 제정고시 알림

1. 국민보건을 위하여 의약품등 안전관리 업무에 항상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 처에서는 위해우려 의약품등 회수·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「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」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·시행함을 알려드리니, 회원사(비회원사 포함)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mfds.go.kr>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」 제정고시 1부. 끝.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감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한약사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,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유통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제약협회장, 한국한약유통협회장, 한국의약품관리원장

주무관 김민수 사무관 정현호  
의약품관리총괄 2016. 6. 30.  
괄과장 김춘래

협조자

시행 의약품관리총괄과-4406 (2016. 6. 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(식품의약품안전처) 행정동3층 의약품관리총괄과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654 팩스번호 043-719-2650 / [fastests@korea.kr](mailto:fastests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

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,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